

DB에 대한 법적 보호제도의 도입

— '93 「저작권법」 개정을 통하여

신각철(법제처 법제연구관)

저작권에 의한 보호제도 채택

정 보화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가장 강조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이하 'DB'라 약칭함)의 보호와 육성에 관하여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좀 때늦은 감은 있으나 93년도 정기 국회에서 「저작권법」 중 일부를 개정하여, DB보호제도가 실현을 보게 되었다.

정부(문화체육부)에서는 지난번(1993. 6. 3)에 저작권법중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이에 대한 각계 전문가, 관련단체, 국민일반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다음 개정안을 작성하여 93년 12월 정기국회(제165회 국회)에서 의결함으로써 저작권법에 의한 DB보호를 제도화 하였다.

그 동안 DB에 대해서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느냐, 아니면 별도 특별입법을 통하여 보호하느냐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일본등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고, DB구축과정에서의 특성과 DB구축의 제1차 자료 자체가 편집 저작물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제도 채택이 바람직함을 이미 이 책자를 통해서도 발표한 바 있다.

(데이터베이스 월드 93. 8월호, 22~27쪽 참조)

DB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DB산업 육성 또는 등록등 관리 측면에서는 별도로 입법하여 활성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이번에 개정된 저작권법중 DB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저작권법 제6조 제1항중 “편집물로서”를 “편집물(논문·수치·도형 기타 자료의 집합물로서 이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을 포함한다)로서”로 한다.

위의 개정·추가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저작권법 본문에 삽입하여 「제6조 (편집저작물)①편집물(논문·수치·도형 기타 자료의 집합물로서 이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을 포함한다)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이하 “편집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라고 볼 수 있다.

즉 편집저작물의 개념정의에서 DB에 대하여, “논문·수치·도형 기타자료의 집합물로서 이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을 포함한다”라는 DB의 특성을 명문화함으로써, DB가 저작물이나 아니냐의 논

쟁의 소지를 없애고 “DB는 편집저작물”에 포함됨을 분명하게 하였다.

즉 DB는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DB 저작권보호의 기본 방향

DB에 대한 저작권법상 저작물(이하 “DB 저작권”이라 한다)로서의 보호에 대한 기본방향은 앞으로 법원등 판례에서 정착되어야 하겠지만, 필자의 의견으로서는 종래의 「편집저작물」에 대한 보호와는 달리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법률의 문장 표현내용 그대로 해석한다면,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반드시 ‘창작성’이 있어야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DB는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있어서 독특한 창작성을 인정받기가 어렵다. 예컨대, 「법령·판례DB」의 경우 소재선택은 이미 제한되어 있고, 배열형식 역시 이미 편별분류등

반영해야 할 것이다.

첫째, DB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의 정신적·육체적 노력이 소요된다. 많은 분량의 정보를 수집·분류해야 하고 이를 축적시켜 그 효용성을 실험·점검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DB에 대해서는 시간적·정신적 노력을 창작적 노력과 같은 비중으로 보호되어야 마땅하다.

둘째, DB의 구축과 아울러 효용성을 확보하는데는 막대한 경제적 투자를 해야한다. 즉 상당기간의 노력에 소요되는 비용과 자료의 수집·축적에 따른 비용 등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일반 다른 저작물에 비하여 월등하게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DB의 경우는 투자비용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셋째, DB의 경우는 대부분이 산업·경제적 측면에서 가치가 있는 유용성·실용성이 있는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물론 오락성DB, 레저용DB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DB는 산업·경제적 측면에서 유용하게 쓰인다.



보편화 되었다. 또한 「농업정보 DB」, 「소비자 구매정보 DB」, 「도서목록 DB」등 대부분의 DB 역시 이미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정보를 수집하여 체계화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별도로 창작한 것은 거의 극소량에 속한다. 또한 사실 그대로 소재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창작성을 가미할 수도 없다. DB의 특성상 정보내용 및 선택·배열에서 창작성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이 보호요건에서 창작성을 요구하기 보다는 다음과 같이 DB의 특성에 맞는 현실성을

따라서 DB의 경우는 국가의 산업·경제정책 측면에서 보호방향이 설정되어야 하다.

특허출원, 반도체칩 회로설계, 영업비밀 등의 경우도 그 자체의 독창성 못지않게 산업·경제적 측면에서의 유용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DB저작권 보호에 있어서는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있어서의 ‘창작성’에 비중을 두어서는 아니되고, DB의 특성을 감안하여 ①정신적 노력, ②경제적 투자비용, ③산업상 유용성 등 3가지 측면에서 보호방향이 설정되

어야 할 것이다.

판례에서도 정신적 노력 인정

DB와는 직접 관련이 적으나 편집저작물에 대한 대법원 판례(1979. 12. 28, 79도 1482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신적 노력도 창작적 노력과 같이 보호의 가치가 있음을 밝혔다.

이 판례는 ××출판사에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고유의 민속자료를 사진으로 모아서 「민속도감」이란 편집저작물로 발간하였다.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논쟁은 전부터 내려온 민속화등 수집된 도화는 편저자의 창작적 노력이 없이 단순한 수집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편집저작물로서 보호할 수 없다는 주장과, 이에 반대되는 주장은 상당기간 수집활동 등 「정신적 노력」에 대해서도 창작물로서 보호함이 마땅하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은 「개인의 편저 또는 수집적인 민속도감이나 도록(圖錄)에 수록된 도화들은 비록 그 대상이 옛날부터 존재하던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화나 전통문양이라 하더라도 그 소재의 선택 및 배열과 표현기법에 있어서 개인의 정신적 노력을 바탕으로 한 창작물이라 하여 편집저작물로 보호된다」라고 판결하였다.

위의 판결과 DB와 관련지어 살펴본다면, DB를 구성하는 요소 자체는 창작성이 없다 하여도 상당기간의 소재 선택, 수집, 배열 등 정신적 노력을 하였다면 이를 창작물로서 보호됨이 마땅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종래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 보다는 정신적 「노력과 비용」에 대하여 더욱 비중을 두어야 한다. 그 이유는 DB의 경우 이를 직접 구축하기 보다는 이를 복제할 경우 훨씬 노력과 경비가 덜 들기 때문에 더욱 불공평하므로 「공평의 原則」에서도 노력과 비용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일본 등 외국 판례의 태도이기도 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외국의 판례태도 즉 미국의 West Pub. Co 對 Mead Data Cent 사건 (1986),

일본의 アメリカ語要語集事件(1984)에서도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상세한 내용해설은 다음 기회에 「DB에 대한 외국판례소개」에서 밝힐 예정이다).

DB산업 보호육성법 제정필요

DB산업이 정보화사회 실현의 기간산업 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며, 앞으로 UR협상 타결과 관련하여 통신분야가 대폭 개방될 경우, DB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침투를 우려하지 아니할 수 없다.

농업·공업·상업 등 다른 산업부문보다도 DB산업을 비롯한 정보산업이 외국에 연속될 경우 우리의 산업·경제·문화·교육 등 사회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정보의 독립없이 국가의 독립없다」라는 표현 그대로 오늘날 정보화사회에서 정보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필자는 이 책자를 통해서도 이미 DB산업 육성과 보호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그 대강에 대해서도 밝힌 바 있다.

비슷한 입법 사례로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을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 3920호로 제정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촉진법」은 1987년 12월 4일에 법률 제3984호로 제정·공포 하였다.

즉 프로그램(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법적보호제도를 채택하면서 한편으로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촉진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별법을 이듬해에 따로 제정한 바 있다.

앞으로 DB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등록·관리 등 전반적인 DB개발촉진을 위한 종합적 대책으로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함을 밝혀 두고자 한다.

(이 글은 필자의 소속기관과는 무관한 개인의견임을 밝힘)